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719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0년 9월 8일  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라 설치되는 국·공립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 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바, 안 제7조제3항의 ‘동의를 얻어야 한다.’를 ‘심의를 거쳐야 한다.’로 수정함.
- 또한 부칙의 조례시행일을 동 조례안의 상위법률인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‘2021년 3월 25일’로 수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학교운영위원회의 ‘동의를 얻어야 한다.’를 ‘심의를 거쳐야 한다.’로 수정함(안 제7조제3항).
- 조례안 부칙의 시행일을 ‘공포한 날’에서 ‘2021년 3월 25일’로 수정함(안 부칙).

## 3. 참고사항 : 없음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'동의를 얻어야 한다.'를 '심의를 거쳐야 한다.'로 한다.

부칙 중 '공포한 날부터'를 '2021년 3월 25일부터'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원안	수정안
<p>제7조(학교복합시설의 귀속 및 설치 협의 등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전에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<u>동의를 얻어야 한다.</u></p>	<p>제7조(학교복합시설의 귀속 및 설치 협의 등) ①~② (원안과 같음)</p> <p>③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전에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<u>심의를 거쳐야 한다.</u></p>
부 칙	부 칙
<p>이 조례는 <u>공포한 날부터</u> 시행한다.</p>	<p>이 조례는 <u>2021년 3월 25일부터</u> 시행한다.</p>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 및 「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·운영 규정」 제3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학교복합시설”이란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문화 및 복지 시설, 생활체육시설, 평생교육 시설 등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및 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시장 및 구청장과의 협력을 통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교육감이 설치하는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

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제6조(기능)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학생 및 주민의 정서함양,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·예술 활동 지원
2.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
3. 도시의 열람·대출 및 학생·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신장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
4.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
5.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
6.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7조(학교복합시설의 귀속 및 설치 협의 등) ① 학교복합시설은 교육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②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교육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학교복합시설의 규모, 용도, 재원,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
2.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
3.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
4.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

③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전에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8조(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) ① 학교복합시설의 건축설계를 하는 경우에 학생 사용시설과 주민 이용시설의 출입구 및 이동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학교복합시설은 「건축법」 제53조의2에 따른 범죄예방 기준 충족을 충족하여야 하고,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.

③ 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각종 안전 장치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설의 개방 등)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교육 및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,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. 다만,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 학교 교과 시간에는 학생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개방하고자 하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.

1. 시설별 이용시간, 사용료, 이용수칙
2. 프로그램 안내, 수강료
3. 그 밖에 주민의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시설별 개방시간, 학생의 우선 사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12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.

제10조(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위탁)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주체로 결정된 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또는 자치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

설립하고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
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 또는 자치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
3. 문화·체육·복지·교육 분야에서 운영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
제11조(기관 간 협의) ① 교육감과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「지방교육차지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및 「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협의·조정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, 시 또는 자치구,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12조(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)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, 학부모, 교직원, 지역주민, 교육·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(이하 “운영협의회”라 한다)를 해당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.

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
2.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·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